Ⅱ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1. 전자금융시장의 이해

한편, 전자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 전자금융이 무엇이며 기존 금융업과 차이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이란 전자적 장치[1]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2]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 즉 소비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비대면 및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거래[3]다. 여기서 금융회사와 구별되는 전자금융업자란 전자화폐의 발생 및 관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 결제 등의 업무를 행하고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사업자(금융회사 제외)[4]를 말한다.

사실, 전자금융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바로 전자지급거래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제2조 2) 전자지급거래는 "지급인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5]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대금 지급, 이체 등)을 하게 하는 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업은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업, 선불 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EBPP) 7개 업으로 규정된다.[6] 이러한 7개 전자지급업이 왜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스마트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처리하는 장치를 말함

2)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서(2017)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두 개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의 목적이 전자금융거래의 대중화, 다양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할 때 광의의 개념 즉,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3)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이체, ATM을 이용한 거래를 말함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5) 전자자금 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임

6)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서(2017)

필요하고 전자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급거래와 지급결제 시장에 대해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이 발전하기 전 기존 오프라인 지급결제시장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ATM, 신용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로 이루어졌다. 교통카드와 같은 선불카드는 은행과 연결된 계좌에 직접 이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결제 과정이 간단하지만, 신용카드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매출 정보를 관리해주는 부가가치통신망업체 즉,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필요하다. 〈그림 Ⅱ-1〉은 기존 신용카드의 지급결제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VAN사는 전자금융보조업으로 전자금융업과 구별된다.

〈그림 Ⅱ-1〉 기존 오프라인 지급결제시장과 카드 결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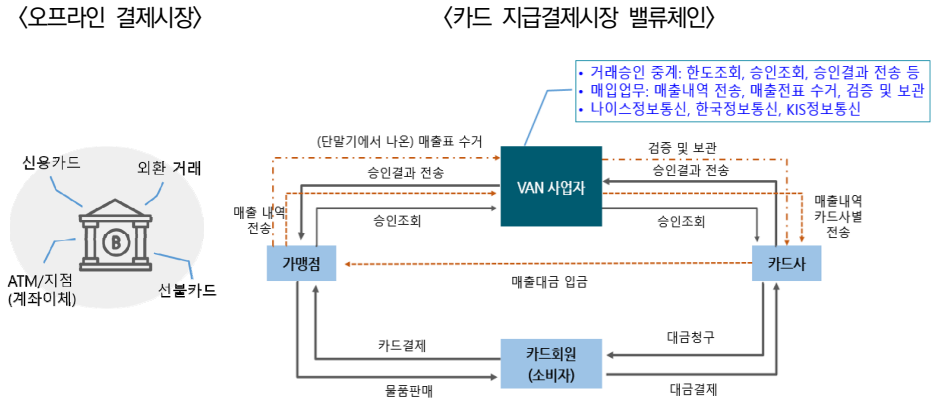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재구성함

한편, 앞서 서론에서 전자금융시장의 발달이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크게 기인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지급업의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거래를 편리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금융거래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지불 및 결제 대행업무(PG)가 필요하며, 카드사와 PG사 그리고 소비자의 안전한 물품전달과 대금전달을 위해 전자대금예치업자가 필요하다.

〈그림 Ⅱ-2〉 전자금융지급결제시장과 온라인 지급결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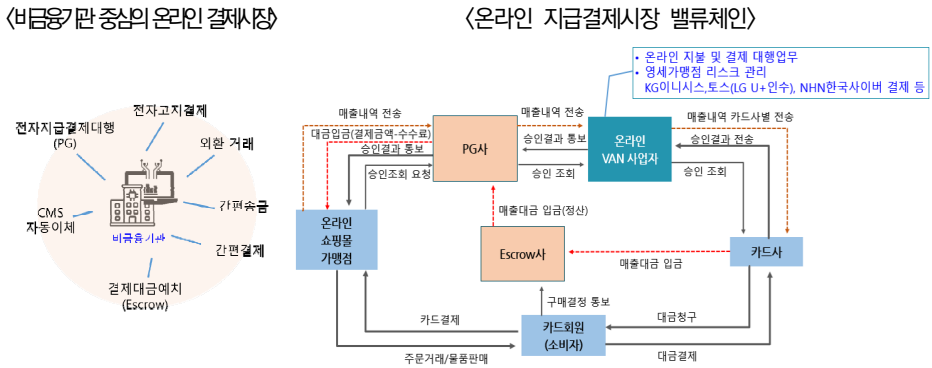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재구성함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전자자금이체업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7]로 흔히 간편송금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불전자지급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즉,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충전한 선불금)되어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업무[8]로 우리가 흔히 보는 교내식당 카드, 티머니, 네이버페이, 케시비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직불전자지급업은 물품구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즉각 이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에 대한 정보를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업무[9]로 흔히 직불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간편결제가 그 사례가 된다. 이 직불카드의 경우 모바일 스마트폰에 의한 인증 절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시장에서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네 번째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10]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케이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유비페이가 그

7)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8) 각주 7)과 동일
9) 각주 7)과 동일
10) 각주 7)과 동일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에스크로로 알려져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상 안전한 구매를 위해 재화의 배송 확인 시점까지 거래대금을 예치받는 업무[11]를 한다. KG 이니시스, 이지체크 등이 에스크로 업무를 하는 주요 업체이다. 여섯 번째로 전자고지결제업은 수취인을 대행해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확인의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12]를 말한다. KIS 정보통신, 더존 등이 그러한 업무를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화폐업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증표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발행하는 업무[13]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K-Cash[14]가 유일한 사례이다.

〈그림 Ⅱ-3〉 전자지급업자의 종류 및 사례

전자지급업자의 종류		국내 사례
구 분	서비스 내용	
전자화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발행하는 업무	K-CASH
전자자금이체업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N Pay, pay, toss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발행, 관리하는 업무	N Pay, cashbee, 티머니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증표 혹은 증표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	toss, pay, NAVER FINANCIAL
전지지급결제대행업(PG)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	K PAY, pay, PAYCO, UBpay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상거래상 안전한 구매를 위해 재화 등의 배송확인 시점까지 거래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KG 이니시스, Easy check, Danal
전자고지결제업(EBPP)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내역을 전자확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Smartro, KIS정보통신(주), DOUZONE

자료: 저자가 재구성함

이러한 국내 전자금융업은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인증 기술의 발달, 금융디지털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수요 증가는 국내 전자금융업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e-금융민원센터의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총 179개 사이며 2019~20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전자지급서비스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47%)과 간편송금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업(26%)으로 나타났다.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12) 각주 11)과 동일함
1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4) 이용자 급감으로 2020년 12월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한 국내 전자금융시장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2020년 이후 전자금융시장 내 비금융회사 즉 핀테크, 유통, 배달 관련 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증가했으며, 또한 이들은 전자금융업체에 중복 등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비금융기업이 전자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증수단의 다양화 및 간편화(지문, 얼굴 등 생체정보)로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시장 내 비금융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비금융전자업자 중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전자지급서비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15] 이는 국내 전자금융시장이 빅테크에 의해 독점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4〉 국내 전자금융업자 현황

〈국내 전자금융업자 등록 현황(22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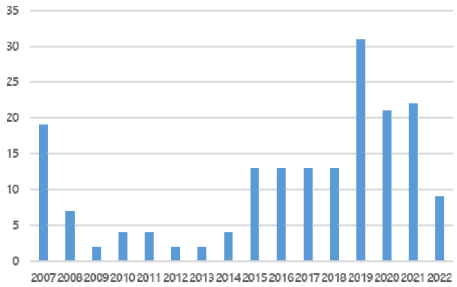

〈등록된 전자금융업 유형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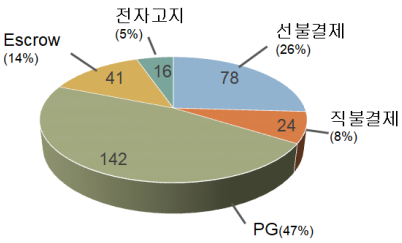

자료: e-금융민원센터(2023) 2022년 기준임

〈그림 Ⅱ-5〉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국내 주요 플랫폼기업의 전자금융업 중복 등록 현황(22년 현재)〉

기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주요 서비스
네이버 파이낸셜	● ('19.11.01)	● ('19.11.01)	● ('19.11.01)	● ('19.11.01)	● ('20.03.24)	- '네이버페이'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적립, 간편결제를 비롯하여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카카오 모빌리티	● ('20.06.03)		● ('20.06.03)			- '카카오T 포인트'로 모빌리티 이용 시 포인트 적립, 선불충전하고 현금처럼 이용 가능
토스 페이먼츠			● ('20.08.03)	● ('20.08.03)		- '국내 대형이커머스 가맹점 대상 PG사업영위 -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PG 연동 컨설팅 서비스
당근페이	● ('21.09.28)		● ('21.09.28)			- 선불식 충전금 '당근머니' 통해 중고거래, 송금, 결제 가능
인터파크	● ('22.04.01)		● ('22.04.01)	● ('22.04.01)		- 모바일 티켓 예매 시, 간편결제 서비스 '원페이', 쇼핑·도서 서비스에 선불전자지급수단 'S-Money' 이용 가능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현황(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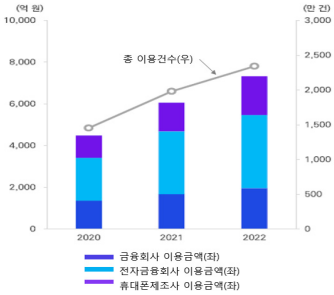

자료: e-금융민원센터,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2022년 기준; 한국은행, 2022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15) 2022년 4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13.2조 원에 달함(삼정 KPMG)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이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은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즉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으로 전자금융업의 영위 및 그 감독에 대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금법은 전자금융의 기본적인 요소와 개별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금법은 2006년 제정 후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비대면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전자금융업 활용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2020. 7월)하고 후속 조치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그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안, 2021년 10월 김병욱 의원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이슈와 갈등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에 의해 촉발되자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선불업 범위 확대와 행위규제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2022년 윤한홍 의원안 등)이 여러 차례 국회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었다. 이후 이 국회에 계류된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6]에 대해 통합·조정한 대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17]하였다. 통과한 대안은 앞으로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후 1년 후인 2024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은행산업 경쟁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고려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를 추진하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의 구조개선 등 6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였으나, 6월 최종 결론을 통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 비은행기관의 결제업무허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 전재수 의원 외 10인(2021. 11. 25), 송재호 의원 외 10인(2022. 2. 14), 이정문 의원 외 11인(2022. 6. 14), 박재호 의원 외 13인(2022. 9. 10), 윤한홍 의원 외 11인(2022. 10. 21), 김종민 의원 외 12인(2022. 11. 4), 강민국 의원 외 11인(2022. 12. 6)

17) 수정 조율되어 통과된 개정법 대안은 ①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② 선불충전금의 보호 강화,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④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을 담고 있음

〈그림 Ⅱ-6〉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최근 규제 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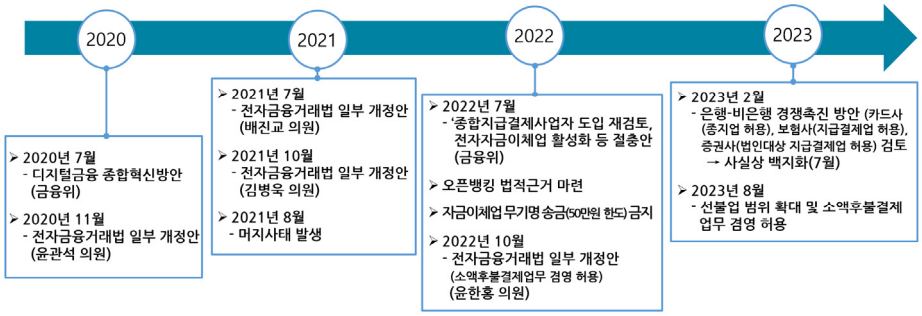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각 연도

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현재까지 다양한 개정안 발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초안이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이에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후 개정안을 통해 수정 및 첨가된 내용은 각 부분별로 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기로 한다.

2020년 전금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간편결제서비스 등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분야를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① 전자금융업종의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한 재설계 ②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진입규제의 합리화, ③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도입, ④ 이용자 자금의 보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Ⅱ-7〉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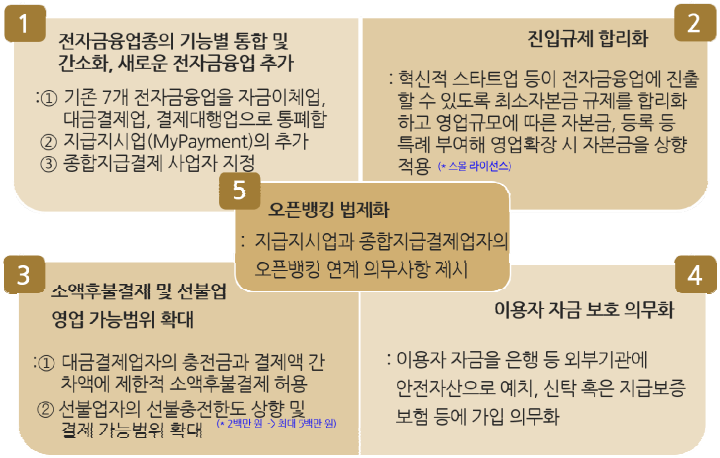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2020)를 재구성함

1) 전자금융업종의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한 재설계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종을 송금, 결제, 대행 기능 중심의 3개로 통합하고 여기에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규율체계를 간소화하여 전자금융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18]

〈그림 Ⅱ-8〉 전자금융업종의 기능별 통합·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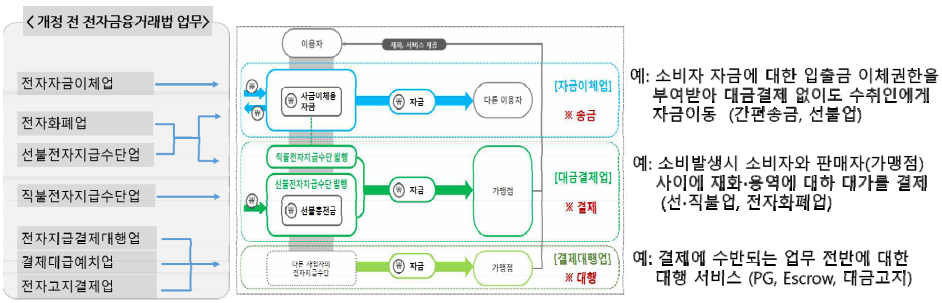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2020)

18) 금융위원회(2018)

새로이 도입된 마이페이먼트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 송금 지시(지급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 즉 마이페이먼트업자는 '고객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일종의 간편송금업이라 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의 신설 배경에는 현행 간편결제업의 수수료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간편결제 즉 전자자금이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계좌의 소유권 혹은 처분권이 있어야 하고, 해당 계좌에 고객자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정산하고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의 선정, 발급 권한 등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행 전자금융업자는 자금 이체를 위해서 고객 계좌가 있는 거래 은행에 출금 요청을 해야 하며, 판매자의 거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입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마이페이먼트사는 고객 계좌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계좌보유와 자금보유)이 필요 없으며 '오직 고객의 동의하에 결제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접근권'만 가지면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상에서 마이페이먼트사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수수료와 거래 리스크를 절감하는 이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마이페이먼트가 활성화될 경우 간편결제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마이테이터와 결합되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종합자산관리가 활성화될 경우 자금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활용이 증가할 것[19]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마이페이먼트사로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앱을 통해 다양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건강관리용품, 건강보조식품, 관련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가입된 보험회사의 앱을 통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온라인 상점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고객의 구매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0]

19) 김시홍(2023)

20) 제시된 사례는 보험업의 입장에서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적용 시 효익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음. 실제 2021년 당시 보험업의 마이페이먼트 진입이 논의된 바가 있었으며 보험회사의 별도 계좌 보유가 없는 이상 보험업 특성상 큰 효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보험신보(2021. 11. 15),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이 먼저다")

〈그림 Ⅱ-9〉 지급지시전달업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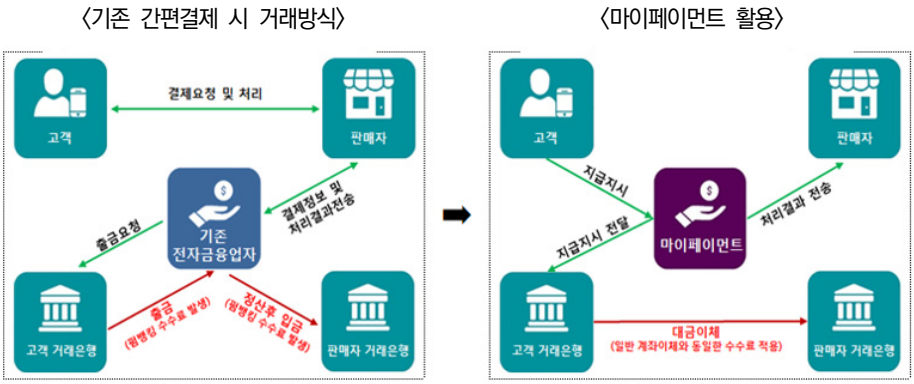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2020)

한편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지급지시전달업 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21]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 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가 영위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로 이들은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금이체업자(마이페이먼트)나 겸영전자금융업자(증권, 카드, 보험회사 등) 중에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업자는 이용자 즉 소비자에게 계좌(지급결제 전용 계좌, Payment account)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지지급거래 청산기관(금융결제원) 등을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22]" 이러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지정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좌를 직접 만들 수 있어 고객의 선불 충전금 보유 한도의 제약 없이 자금을 유치 가능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입출금·결제 등이 가능한 계좌를 만들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된다면 보험가입자의 계좌를 보험회사 내 개설할 수 있고, 보험료의 입금 및 보험금의 지급이 개설된 계좌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 개인관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계좌를 통해 전자상거래나 타 유통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비금융서비스의 지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서비스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

21) 전자금융업의 각 업종별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스몰라이선스와 구별되게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지정 라이선스를 풀 라이선스라고 명칭하기도 함

22) 김시홍(2023)

〈그림 Ⅱ-10〉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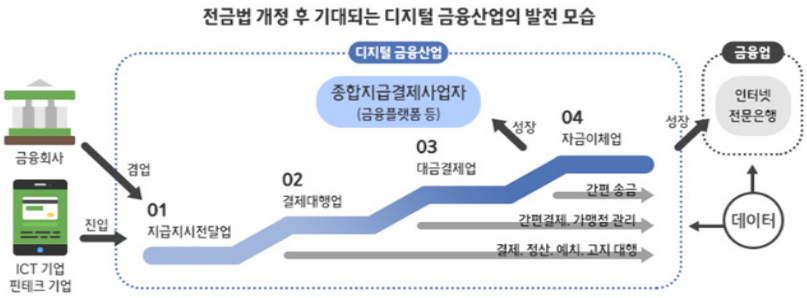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2020)

이미 해외의 경우 유사한 사업자가 존재하며 활성화돼 있다. 싱가포르의 주요지급결제기관, EU 및 영국의 전자화폐기관이 그 사례이다.[23] 〈표 Ⅱ-1〉과 같이 싱가포르의 MyCash Money, 영국의 Revolut는 종합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Revolut의 경우 전자화폐 인가를 통해 환전서비스 제공에서 시작했으나 지급결제계좌 발급 인가 취득을 시작으로 이후 간편결제, 송금 및 인출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뱅크로 서비스를 확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24]

〈표 Ⅱ-1〉 해외 유사 종합지급서비스 사업자 사례

업체	국적	제공 서비스 내용
MyCash Money	싱가포르	• 표준지급서비스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e)에 해당 • 간편결제 및 송금, 공과금 관리, 보험가입 등 서비스 제공
AFEX	싱가포르	• 주요지급서비스기관(Major Payment Institute)에 해당 • 해외송금, 온라인결제, 자산관리(AFEXdirect), 재무상담 등 서비스 제공
Transferwide	영국	• 온라인 송금, 환전, 지출내역 분석 및 자산관리 등 서비스 제공
Modulr	영국	• 간편결제, 송금, 회계서비스 등 제공
Revolut	영국	• 간편결제,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보험가입, 자산관리 등 제공

자료: 각 사 홈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한국은행 및 은행권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지급

23) 서정호(2020)
24) 손재희 외(2022)

결제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고객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은행의 계좌독점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금융위는 은행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급결제계좌를 비은행권, 즉 증권, 카드, 보험업에 허용하는 것을 검토[25]하였으나. 이 경우 소비자 보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26]할 수 있으며 거시적인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나 종합지급결제서비스의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전자금융시장 활성화와 확대를 고려할 때 향후 재추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혁신적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진입규제의 합리화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기 용이하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화하고 영업 규모에 따른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하는 방식인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을 적용해 스타트업의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제안하여 소규모 사업자로서 전자금융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자금융업자들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라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각각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초기자본도 해외대비 높은 수준으로 부담이 높아 전자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27]에서 출발한다. 〈그림 Ⅱ-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20년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특히 향후 전자금융업자의 능력, 이용자 자산보호 대책, 책임이행능력에 따라 라이선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2. 22), "제1차「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개최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26)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많은 부분에서 은행업과 유사하지만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아 소비자 보호 등 다수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은 2020년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에도 다수의 학계로부터 지적되어온 부분임(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2)

27) 금융위원회(2018)

〈그림 Ⅱ-11〉 전자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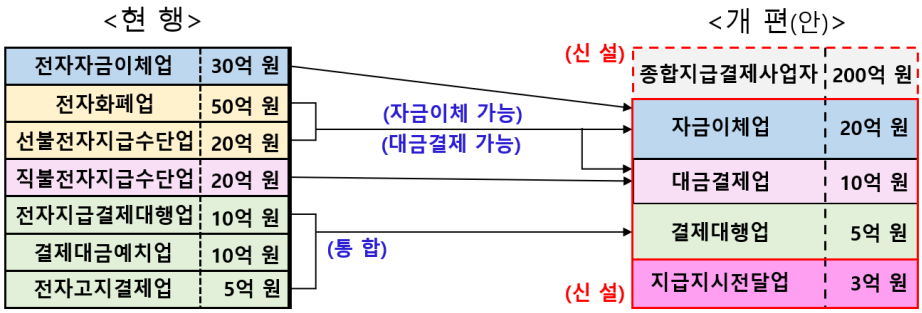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2020)

3)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도입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 간의 차액(결제부족분)에 대해 제한적 소액후불결제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후불결제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결제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우선 가맹점에 거래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후에 결제업체에 분할납부하는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지만 소액후불결제업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물론 샌드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특례적용으로 여러 부가조건이 부여되어 서비스에 제한이 걸려 있다. 즉 〈표 Ⅱ-2〉에서와 같이 국내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액이 제한적이며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

〈표 Ⅱ-2〉 소액후불결제업무 샌드박스 지정 현황

업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서비스 내용	이용 가능 가맹점
네이버 파이낸셜	2021. 2. 18 ~2024. 2. 17	•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네이버페이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액(부족액)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결제, 쇼핑이력,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별 개인한도 산정 • 월 한도: 30만 원, 분할납부 불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페이 전 가맹점
카카오페이	2021. 5. 26 ~2024. 5. 25	• 후불형 교통카드 형태 • 선불충전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후불결제서비스 제공 • 향후 쇼핑 등 결제 영역 확대 추진 • 월 한도: 15만 원, 분할납부 불가	버스, 지하철, 하이패스 등
토스	2021. 11. 12 ~2024. 11. 11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용역을 구매하려는 이용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 시 대안신용평가 후 후불결제서비스 제공 • 월 한도: 30만 원, 분할납부 불가	AK몰 브랜디, 하이버, 마미 등 4개 온라인쇼핑몰

자료: 김시홍(2023)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함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405회 국회 제2차 정부위원회)이 통과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업업무로 제도화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대부나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총 제공한도, 이용한도, 경영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등의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르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표 Ⅱ-3〉와 〈표 Ⅱ-4〉 참조).

〈표 Ⅱ-3〉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업무 규율 내용

구분		규율 내용	비고
적용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만 규율	여신전문금융업 (카드업 규제) 준용 삭제
라이선스(진입요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승인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후불결제 허용조건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소액충전으로 후불결제 허용 •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재원 마련	-
행위 규제		• 선불충전금은 소액후불결제 재원으로 사용 금지 •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 대부나 융자 금지 • 행위규제 세부사항 시행령 위임 - 후불결제업무 범위 - 이용한도 - 총 제공한도 - 경영 건전성 관리 - 신용정보 관리 - 채권회수 관리 - 이용자 보호 방안 - 그 밖에 필요 사항	-
제재	형사 처벌	•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후불결제업무를 할 경우 • 가상거래를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 또는 대행 • 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및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
	등록 취소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 (이용자별) 개인결제한도액, 그리고 (선불업자) 총 제공한도 위반	-

자료: 김시홍(2023)

〈표 Ⅱ-4〉 소액후불결제서비스 샌드박스 부가조건 주요 내용

부가조건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제공범위	• 환금성 상품과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후불로 구매할 수 없으며,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은 금지함
총 여신잔액	• 분기별 총 여신잔액은 사업자의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20% 이하로 제한함
이용자 한도	• 1인당 후불결제 한도를 최대 30만 원(카카오페이의 경우 15만 원)으로 하고,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함
건전성 관리	• 자산건전성 분류 운용 및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사항은 카드사 신용판매와 동일하게 적용함(여신업 감독규정 제11조) • 소액후불결제 이용잔액뿐만 아니라, 미사용한도에 대해서도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함
연체정보 관리	•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금융이력 부족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제한받는 상황을 최소화함 • CB사와의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CB사의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 CB사는 후불결제 연체정보를 금융권, 상거래기업 등의 다른 연체정보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제3자(금융회사 등)와의 공유를 제한함
채권 추심	• 후불결제 미수금 채권은 매각하지 않고,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법규를 준수하여 추심
소비자 보호	• 결제도용, 소위 '깡' 등 다양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의 유형을 모니터링함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23. 4.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05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후불결제업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계는 카드업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지불이 불가능한 이용자에게 사실상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드업계에서는 여신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후불결제는 신용평가 절차가 없으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되고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는 신용서비스가 아닌 결제서비스[28]라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보다 비교적 소액후불결제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의 경우 후불결제서비스 사용 확대로 인해 후불결제서비스 사용자들의 부채가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의 후불결제서비스 사용이 더 가속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29] 따라서 국내 후불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해 소비

28) 이수환(2022)

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제 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금융위로부터 선불지급업 허용을 받은 보험업은 선불지급업으로 등록을 한다면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업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아직 후불결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해외진출 혹은 후불결제서비스가 요구되는 일반보험시장의 경우 이러한 후불결제업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다.

4) 이용자 자금의 보호 의무화

2020년 전금법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의 안전한 보호를 강조하여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에게 예탁한 자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을 별도 이체하여 보호[30]하도록 하였다(미·일과 동일 수준 보호).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예탁한 후 별도 이체된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더불어 만일 전자금융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의 채권자들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때에도 이용자들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5) 오픈뱅킹의 법제화 추진

2020년 전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아직 국회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금법개정안에 내포되어 있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있다. 즉 2020년 전금법개정안은 마이페이먼트의 오픈뱅킹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금이체 지시에 대한 금융회사의 처리 협조의무, 차별금지의무(처리순서, 소요시간, 수수료 등), 관련 API 인프라 구축 등의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오픈뱅킹은 현재 출범 이후 가입자, 등록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 12월 현재 3,000만 명(순가입자 수)의 가입자가 1억 개(순등록계좌 수)에 이르는 계좌를 참여기관 오

29) 신경희(2023)

30) 별도 이체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대하여 은행 등 관리 기관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여 자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픈뱅킹 앱에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거래량이 83억 8천만 건을 넘어섰고,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비롯한 약 120여개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31] 또한 마이데이터 역시 '22년 9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 약 5,480만 명,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약 3.84억 건으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22년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증가될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다.[32] 이렇듯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고려할 때 향후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사업 확장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즉,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그리고 마이페이먼트 기능이 결합된다면 소비자의 종합자산관리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Ⅱ-12〉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연계 사업효과

자료: 금융위원회(2020. 7. 6), 오픈뱅킹 세미나 별첨자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그림 Ⅱ-6〉 참조) 2020년 금융위가 제시한 전금법 개정은 이후 몇 차례 일부 개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 되었다. 특히 2023년 5월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21),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3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0. 19), "「내 손 안의 금융 비서」가 보다 똑똑해집니다. -금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 대폭 확대-"

정안은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여 선불전자지급전자수단 범위를 확대했고,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규율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33] 또한 ②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선불 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34]하고 선불 충전금 이용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③ 선불업자의 행위규제도 강화하였는데 선불전자지불수단의 환급에 대한 행위 규칙을 특히 강화하였으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가맹점의 폐업이나 계약만료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명시하였다(〈그림 Ⅱ-13〉 참조).

〈그림 Ⅱ-13〉 2023년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반영에 따른 전금법 개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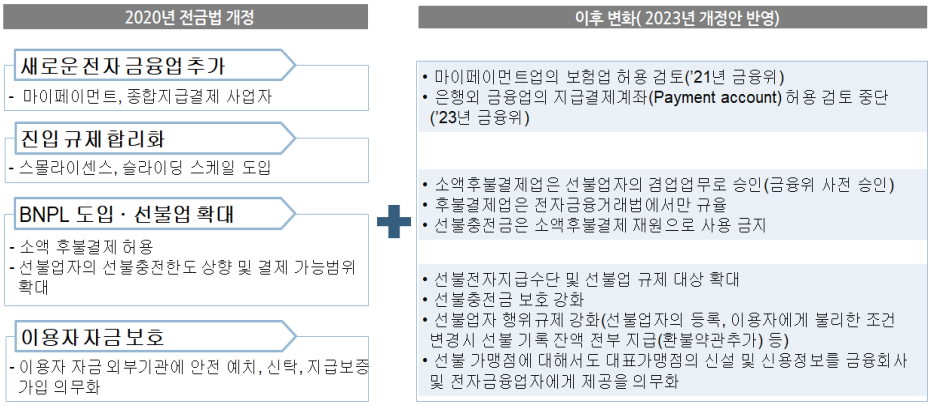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함

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전자금융시장의 변화

앞서 살펴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지금까지 전자금융시장 성장을 이끌었던 기존 동인과 함께 전자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 및 경쟁의 심화이다.

33) 예를 들어 이제 모바일쿠폰 그리고 전자상품권 등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됨

34)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신탁, 예치, 지급보증 보험 방식으로 별도로 관리함

기존 지급결제의 기본 구조는 은행-은행 간 거래 혹은 카드사-소비자의 거래로 이루어졌다. 즉, 모든 지급결제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만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비에 따른 대금의 지불 및 결제는 금융기관의 중개를 반드시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시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발달은 지급결제방식을 계좌 기반(계좌-계좌)으로 바꿀 것이며 상품구매 자체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결제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35] 이러한 변화는 향후 자금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빠르게 계좌중심 결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지급 및 결제 프로세스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기존 금융기관의 인지도는 중요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며 계좌정보에의 접근성 혹은 계좌의 보유는 전자금융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시장 내 다양한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증가 그리고 이들의 복수 전자업자로의 등록과 제공 서비스의 확대는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36] 즉 이들 비금융업자들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경우 소비자의 결제는 비금융서비스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임베디드 방식으로 내재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고객을 플랫폼 내 머물게 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고객정보까지 독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전자금융시장 내 가능한 신사업을 다양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융상품의 투자자문, 대출 중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37] 전자금융업자 중 마이데이터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자체 보유한 결제 시스템과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이 있다. 이러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35) 이렇게 고객이 다른 금융서비스 공간에 별로도 접속하지 않아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련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베디드 파이넌스라고 명칭함(곽선호 2021)

36) 국내 핀테크 빅테크기업의 경쟁적 시장 참여 외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은 국내 간편결제시장의 또다른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애플페이는 이미 후불결제서비스, 저축계좌, 선불형 지급수단 등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어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 도입될 경우 간편결제가 아닌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친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김규림 외 2023)과 국내 제도적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한국은행 2023a)이 동시에 존재함

37)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2022)

(Thin-Filer)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유용하며, 금융이력이 없어 신용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소비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들에게 대출중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씬파일러에게 제공 가능한 금융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BNPL)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불결제는 결제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비자는 추후에 결제업체에게 분할납부하는 결제 서비스로 금융거래이력이 없어 신용점수가 없고 따라서 신용카드 활용이 어려운 소비자들, 특히 젊은계층이 신용카드 없이 필요한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국내에서는 이미 이러한 후불결제가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인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제공하고 있다. 후불결제서비스와 같은 소액신용서비스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씬파일러의 데이터 집적을 높이고 이렇게 집적된 데이터는 다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통해 결국 소액신용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38]

〈그림 Ⅱ-14〉 후불결제 프로세스와 대안신용평가 시스템(활용 프로세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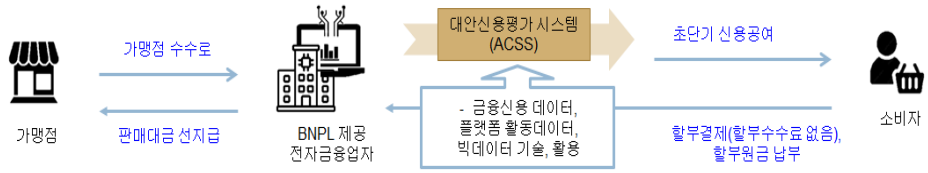

자료: 日本総研(2021)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세 번째로 전자금융시장의 성장은 곧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시장 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금융업자의 시도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내 개인사업자와 중소

38) 장성원(2021)

상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실 국내 개인사업자와 중소상인은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취약한 물적 담보력, 불규칙한 매출, 낮은 금융거래 이력, 매출 및 지출, 회계관리 시스템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낮은 금융 접근성, 재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39] 이러한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빅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전자금융업자들은 이들의 지급결제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시 분석해 더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표 Ⅱ-5〉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상품 출시 현황

전자금융업자	대출상품 설명
Toss Bank	• 연 소득 5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제공
Kakao Bank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대상 • 매출액과 상관없이 대출 신청 가능
Kbank	• 사업자 등록 후 1년 경과 후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상 • 신용대출과 보증서담보대출 제공
건전성 관리	•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고, 반품률 20%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제공 •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분석하여 신용 심사

자료: 각 사 자료

마지막으로 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가 더욱 다양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자금융시장의 활성화는 그동안 B2C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 그리고 다양한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은 B2C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B2B를 대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B2B 대상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순히 금융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결제 서비스와 동시에 확보되는 비금융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각 B2B시장 특성과 니즈에 맞춰 특별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

3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0. 21),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피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TF」 출범”

가가치를 더욱 높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류 전문 기업인 KL-Net은 '21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전자금융업에 등록하고, 물류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수출입 물류 비용의 자동수납 및 결제서비스, 전자결제 및 자동수납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즘아라'를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ZIKPAY는 '22년 지급결제예치업으로 등록하고 제조, 건설,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용역거래대금을 안심계좌에 예치해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지연, 미수금, 지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ANAK은 '20년 PG사로 등록한 기업으로 이 회사가 개발한 '이페이데이'는 결제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통합정산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병·의원과 제휴를 맺어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병예측에 활용하는 등 병원 내 정산관리와 의료 데이터 분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PG사 최초로 장정맥 기반 바이오 인증기술(Handit)을 개발해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공항 내 셀프 체크인, 항공권 확인, 여권 없는 물건 구매 등이 가능한 서비스 등 제공 가능한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림 Ⅱ-15〉 B2B 기업 및 기관 대상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사례

구 분	확장된 전자금융 서비스 내용	
KL-NET PLISM ARA		• KL-NET은 '21년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물류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물류기업대상 청구서 자동발급,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결제, 자동수납확인 등의 서빗를 제공함
ZIKPAY 안심결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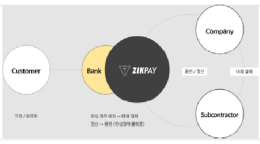	• ZIKPAY는 22년 지급결제 예치업을 등록, 제조, 건설,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용역거래 대금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예치한 금액만큼 업체에게 토큰으로 대체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KANAK ePAYDAY		• KAMAK은 '20년 케이페이먼츠라는 이름으로 PG사 등록 후 의료분야에 특화한 데이터분석 및 통합정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 최근 PG사 최초로 장정맥기반 바이오인증(Handit) 개발, 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공항 내 셀프 체크인, 항공원 확인, 여권없이 물건구매를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함

자료: 김규림 외(2023) 및 각 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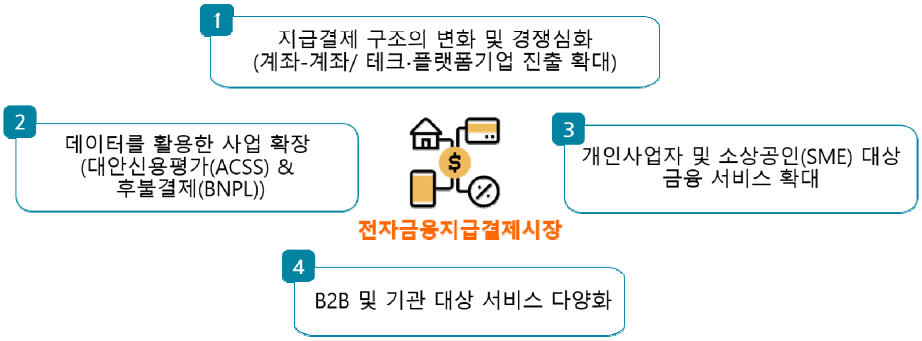
〈그림 Ⅱ-16〉 전자금융시장 환경변화의 특징